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3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태규 · 조배숙
최보운 · 엄태영 · 김대식
우재준 · 이현승 · 안상훈
성일종 · 이주영 · 조정훈
주호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, 양부모에 대한 교육,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,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입양의 효력발생) ① (생략)	제26조(입양의 효력발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장관, 국가</u> <u>아동권리보장원의 장</u> ----- ----- -----.